

공고 제2022 -698호

[■] 통행의 금지·제한  
[ ] 차량의 운행 제한

공고
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·제2항, 제7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

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[■] 통행의 금지·제한  
[ ]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

합니다.

2022년 05월 24 일

영동군



도로의 종류	군도	노선명	10호선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에 따른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	구간	심천면 고당리 562-1 ~ 심천면 마곡리 686
기간	2022년 05월 29일 07:00 ~ 18:00		

이유

금정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낙석방지망 설치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통행을 금지·제한하고자 함

그 밖의 사항

우회도로 현황(통행 금지·제한 구간을 이용해야 할 도로 이용자는 우회도로 사용)  
“붙임 위치도 및 우회도로 안내도” 참조

첨부서류: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